

- ③ 분기별 수익보고서의 추가반영 속도가 효율적 시장론자의 예상보다 높음  
④ **주말효과** : 금요일 증가, 월요일 시초가가 낮아져서 월요일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하면 초과수익  
⑤ **저PER 효과** : 높은 PER 주식에 비해 낮은 PER 주식의 미래의 수익률이 높음  
⑥ **규모효과** : 소규모 기업이 대규모 기업보다 수익률이 높음  
⑦ 장부가치/시장가치 비율이 높은 기업이 수익률이 높음  
⑧ **소외기업 효과** : 해당 종목에 대한 증권분석가의 수가 적을수록 높은 성과 거짐

08. 증거금의 종류 ★★★★★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개시증거금(initial margin)     | 거래개시 시점에 선물매입자와 선물매도자가 모두 예치해야 하는 최소증거금 수준                  |
| 유지증거금(maintenance margin) | 거래개시 이후 고객의 증거금계좌에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 증거금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개시증거금의 70% 정도 |
| 추가증거금(additional margin)  | 증거금계좌의 잔액이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졌을 때 개시 증거금 수준으로 채우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 수준   |

7과목 세금설계

01. 국제부과의 원칙 ★★★★★

- ① **실질과세의 원칙** :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는 원칙  
▶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와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로 구분  
② **신의성실의 원칙** :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도 준수  
③ **근거과세의 원칙** ④ **조세감면의 사후관리**

02. 세법적용의 원칙

- ① 납세자 재산권 부당침해금지 ② 소급과세의 금지  
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④ 기업회계의 존중

03. 종합소득공제 ★★★★★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적공제             | 기본공제 150만원              | ·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<br>- 장애인인 연령요건의 제한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추가공제                    | · 경로우대자공제(70세 이상) : 100만원<br>· 장애인공제 : 200만원 · 부녀자공제 : 50만원<br>· 한부모공제 : 100만원<br>-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 안됨 |
| 연금보험료 공제         |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택담보노후 연금이자비용 공제 | 연간 200만원 한도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별소득공제           | 보험료공제                   |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주택자금 공제                 |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%(한도 있음)<br>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(한도 있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세제한특별세법상 소득공제   |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04.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★★★★★

- (1) 비영업대금의 이익 : 25%  
(2)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  
(3)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계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: 14%  
(4)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: 9%  
(5) 비실명이자소득 : 42%(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분은 90%)  
(6) 기타 일반적인 이자소득금액 : 14%

05.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★★★★★

- ① 일반적인 배당소득 : 14%  
②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: 25%  
③ 비실명배당소득 : 42%(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적용분은 90%)  
④ 거주자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: 25%(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9%)

06.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 ★★★★★

| 구 분    | 세 율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소기업주식 | 소액주주 | 1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대주주  | 20%(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%)          |
| 대기업주식  | 소액주주 | 보유기간 관계없음 20%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대주주  | 1년 이상 보유 20%(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%) |
|        |      | 1년 미만 보유 30%                   |

07.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★★★★★

|     | 양도가액      | 실지거래가액 원칙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-) | 취득가액      |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등         |
| (-) | 기타 필요경비   | 실제발생경비 또는 개산공제액            |
| =   | 양도차익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-) | 장기보유특별공제  | 토지 및 건물에 한하여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|
| =   | 양도소득금액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-) | 양도소득기본공제  | 연간 250만원(주식은 별도)           |
| =   | 양도소득 과세표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×   | 세율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이패스코리아 회원님에게 드리는 선물

▶ 신규가입 선물

- ☞ 이패스코리아 신규 가입시 수강료 5% 할인쿠폰 지급

▶ 재방문 회원 선물

- ☞ 기존 회원 중 최근 12개월 미구매 회원에게 수강료 5% 할인쿠폰 지급

[BEST] 금융, 은행 ‘1 + 1’ 과정

[더블A] AFPK + ARPS 패키지

- 수강기간 1년, 수강료 50%할인(339,000원), 전 교재 모두 포함

[은행더블] AFPK + 투자자산운용사

- 수강기간 1년, 수강료 50%할인(470,000원), 이패스 제작교재 포함

[금융더블] 금융투자분석사 + 재무위험관리사

- 수강기간 1년 6개월, 수강료(470,000원), 이패스 제작교재 포함

직장인도 상위합격하는 CFP 온라인 과정 안내

2023년 9월 시험대비 CFP 프리미엄 패키지

- 구성 : TVM + 정규이론 + 문제풀이 + 최종모의고사  
· 교재 : 기본서(9권), 재무계산기, 문제집, 모의고사  
· 교육비 : 450,000원(대학생 전용 400,000원)

2023년 시험 안내

[400%환급반] 2023년 11월 시험대비 AFPK패키지

- 구성 : 정규이론 + 문제풀이 + 핵심요약 + 최종모의고사  
· 교재 : 기본서(8권), 모듈별 핵심요약집 및 문제집  
· 혜택 : 상위권(10위) 합격 시 400%환급, 합격 시 200% 현금 환급  
· 교육비 : 329,000원

※ 이패스코리아 AFPK 수강(수료) 후 합격 시 CFP 정규이론 + 문물강의 무료 제공!(이패스 제작교재포함)

[합격보장반] 2023년 11월 시험대비 은퇴설계전문가(ARPS) 과정

- 구성 : 정규이론 + 요약&문제풀이  
· 교재 : 기본서(3권), 요약&문제풀이집 ‘신(信)의 한 수’  
· 교육비 : 195,000원

[NEW] 연금상담전문가 온라인과정

- 정규이론(기본서 포함) / 계속교육 40학점 인정

계속교육학점 과정

한국FPSB ‘윤리 & 계속교육학점’ 공식 지정기관

2021년 8월 1일부터 한국FPSB의 윤리 필수1학점(무료)과 이패스코리아 윤리1학점 과정을 수강하시면 [윤리 2학점] 수료가 됩니다.

· 과정명

1. 통련하는 FP가 되기 위한 재무설계직업윤리 레벨업  
2. FP리더십 강화를 위한 재무설계직업윤리 역량 레벨업  
· 교육비 : 10,000원 [수료 시 1학점 인정]

30여개의 다양한 계속교육학점 과정 보유

단과, 종합, 패키지 등 필요학점만큼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 
\*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

과정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은  
홈페이지 <http://www.epasskorea.com>  
상담전화 1600-0522

시험에 꼭 나오는 핵/심/체/크

2023년 7월 22일(토) 시험대비

AFPK

이패스코리아가 여러분의 합격을  
지원합니다!



◆ AFPK 시험정보 ◆

- 시험일 : 2023년 7월 22일(토)14:00~18:00  
· 합격자 발표일 : 2023년 8월 11일(금)

1과목 재무설계 및 윤리

01. 재무설계

- 2000년 4월 : 한국 FP협회 창립
- 미국의 CFP Board of Standards와 업무 제휴(13번째 회원국)
- 2004년 2월 : 한국FP협회 분리
- 호주,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AFP자격 수여
- CFP 자격인증자는 4E 교육, 시험, 윤리, 경험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AFPK 자격인증자는 4E 중에서 경험을 제외한 교육, 시험, 윤리만 충족되면 된다.
-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 중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(4단계 이후부터는 독단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, CFP 자격인증자의 지도 감독을 받아 이루어진다.)

02. 재무제표

- 자산의 분류 : 일반적으로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 분류 \*6가지의 항목 구분
  - 현금 및 현금등가물(투자목적의 자산 중에서 6개월 미만인 양도성예금증서는 현금성 자산에 해당함)
  - 저축성자산(변액보험은 투자자산으로 분류)
  - 투자자산(세제혜택 연금저축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며, DC형 퇴직연금과 IRP퇴직연금도 금융투자자산으로 분류)
  - 사용자자산(자동차, 보트, 회원권, 가구, 의류, 보석 등)
  - 기타자산(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,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등)

03. 재무상태 분석 / 채무자구제제도

- 소비지출이란 식료품비나 주거비 등 생활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며, 개인이나 복지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.
- 비소비지출이란 복지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, 즉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출을 말한다.

| 평가지표      | 재무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이드라인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비상예비 자금지표 | 유동성자산<br>월평균자산<br>* 유동성자산 = 현금성자산 + 저축성자산<br>* 월평균지출 = [(고정지출 + 변동지출) - 소득액] / 12개월 | 3~6배  |

- 가. 신속채무조정(연체 전 채무조정)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  
나. 프리워크아웃(사전채무조정)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 
다. 개인워크아웃(채무조정)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
- 부동산 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
  - 사회취약계층 등의 채무조정 / 취약채무자의 특별면책
- 라.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‘급여소득자’, ‘영업소득자’ 변제기간은 변제가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.
- 마. 개인파산 낭비 또는 도박은 면책 불허가.

04. 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 ★★★★★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충실의무    | ① 신의 또는 선관의무라고도 소개되는 충실의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성의무로 구성되며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<br>② 모든 전문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의무이며, 고객의 합법적 이익을 최우선       |
| 고지의무    | ① 충실의무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제안되는 투자방안에 내포된 위험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것<br>② 미국에서는 기만이나 사기방지를 위한 반사기조항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.             |
| 진단의무    | ① 재무설계사의 책임 중 핵심요소로써 ‘투자의 적합성’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음<br>②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상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중요한 요소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문의무    | 재무설계사가 업무수행 중 어떤 사항이 자신의 개인적 능력의 한계를 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갱신유지 의무 | 재무설계사는 정해진 계속 교육을 이수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제도의 내용과 함께 새로 개발된 금융 및 상품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파악하고 보강하여야 자격을 갱신할 수 있음 |

05. 윤리원칙 ★★★★★

- (1) 고객우선의 원칙 (2) 성실성의 원칙 (3) 객관성의 원칙  
(4) 공정성의 원칙 (5) 전문가 정신의 원칙 (6) 능력개발의 원칙  
(7) 비밀유지의 원칙 (8) 근면성의 원칙

06. AFPK® 자격표장 사용기준 /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™

- AFPK 자격표장 사용기준은 한국FPSB가 지적 재산권을 보유
- AFPK 자격표장이라 함은 세 가지 자격상표 중 두 가지 이상을 집합적으로 지칭함을 말함
- 사용 및 복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
- 로고의 경우 항상 아트웍 원본으로부터 복제하여 사용

- ① 항상 대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  
② 글자 사이에 생략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③ 항상 ®심볼을 윗첨자로 사용하여야 한다. 단, 인쇄물이나 문장 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윗첨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볼의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.  
④ 항상 자격인증자, 자격자, 인증자 등의 적절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명사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단, AFPK® 자격 상표를 자격인증자의 이름 바로 다음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  
독자적 사용사례 : 홍길동 AFPK®

